

의안번호	2219050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6.9.21.
추계번호	26D2693
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4(2차 가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·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,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음(제2항) - 5·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교육 및 홍보 -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, 피해 사실 부인·왜곡, 조롱·모욕·희화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 -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법률상담, 심리상담, 의료지원, 권리구제 지원 -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의4(2차 가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5·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시행(안 제8조의4)
 - 개정안은 5·18민주화운동을 부인·비방·왜곡·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

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, 관련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·처벌하도록 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5·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교육 및 홍보
 -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, 피해 사실 부인·왜곡, 조롱·모욕·희화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
 -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법률상담, 심리상담, 의료지원, 권리구제 지원
 -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
- 다만, 현시점에서 5·18민주화운동 관련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교육, 홍보의 규모 및 소요비용,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,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의 대상, 범위, 규모 및 비용, 피해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2026년 기준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」 사업 중 5·18민주화운동 관련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고 있음

[표 1] 통일부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」 사업 예산 : 2026년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내내역사업	예산
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	5·18기념재단 지원	기념사업	349
		국제연대사업	396
		교육문화사업	401
		기록진실	405
		5·18국제학술연구	760
		인건비	1,826
		합계	4,137

자료: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사업설명자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